

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-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[주식]
- **효력발생일** : 2015. 5. 18.
- **정정 사유** :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
- **정정 내용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2015.2.28	<u>2015.4.30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모자형 구조	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	<u>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퇴직연 금 펀드[주식]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	<u>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퇴직연 금 펀드[주식]</u>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. 의무해지	법 개정사항 반영	<u>(5)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	회계감사관련 내용 기재	<u>③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.</u>  <u>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</u>

		<p>원 이하인 경우</p> <p>- <u>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</u></p> <p><u>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</u></p> <p><u>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</u></p> <p><u>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</u></p>
--	--	--